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842 발의연월일: 2024. 10. 23.

발 의 자: 장경태・이기헌・박홍배

박지원 • 이건태 • 전현희

이성윤 • 민형배 • 박균택

조계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특정 타인의 불행이나 사건, 사고 등을 공론화하고 이를 콘텐츠로 제작하여 조회수를 올리고 수익을 창출하 는 일명 "사이버렉카"로 인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협박 및 사 이버폭력 등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판 결과 비교적 가벼운 형량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고 벌금형의 경우 그 금액이 사이버렉카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너무나 적어 처벌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한 정보 등을 유포하는 자에 대하여 법원이 해당 계정을 정지 또는 해지 등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상습적으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가중처 벌 규정을 신설하며,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훼손 정보를 유통하는 사례를 근절하고 자 함(안 제44조의11 신설, 제70조제3항 및 제75조의2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44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11(불법정보 유통에 관한 법원의 명령) ① 이 법에 따른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불법정보 유통 등 침해행위에 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 침해행위의 정지
- 2. 불법정보의 삭제
- 3.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특정 계정의 정지
- 4. 불법정보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
- 5.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최소한의 부담이 되는 범위에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② 제1항의 경우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5조의2 전단 중 "제72조제1항제2호"를 "제70조제1항 및 제2항, 제72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7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3(형벌과 조치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제70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 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불법정보로 인한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 1. 불법정보의 삭제
- 2.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계정의 정지·해지 또는 폐쇄
- 3. 불법정보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
- 4. 그 밖에 불법정보의 유통에 따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신 설></u>	제44조의11(불법정보 유통에 관
	한 법원의 명령) ① 이 법에
	따른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
	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불법정보 유통 등
	침해행위에 관하여 정보통신서
	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
	치를 명할 수 있다.
	1. 침해행위의 정지
	2. 불법정보의 삭제
	3.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특정
	계정의 정지
	4. 불법정보에 대한 접근을 막
	기 위한 조치
	5.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 제
	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 • 운영
	자에게 최소한의 부담이 되는
	범위에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② 제1항의 경우에 이 법에 따
	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없
	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

제70조(벌칙) ①・② (생 략)

<신 설>

③ (생략)

제75조의2(몰수·추징) 제72조제1 항제2호 및 제73조제7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 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 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다.

<신 설>

	는_	신청자는	: 그 선	신청으로	인하
	여	발생한	손해를	. 배상ㅎ	} 여야
	한[<u> </u>			
제	702	조(벌칙)	1.2) (현행3	과 같
	음)				

- ③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가중한다.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75조의2(몰수 · 추징) <u>제70조제1</u> <u>항 및 제2항, 제72조제1항제2호</u>

제75조의3(형벌과 조치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제70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죄를 범 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 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불법정보로 인한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 1. 불법정보의 삭제
- 2.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계정의 정지·해지 또는 폐쇄
- 3. 불법정보에 대한 접근을 막 기 위한 조치
- 4. 그 밖에 불법정보의 유통에

 따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하

 여 필요한 사항